

『無冤錄』과 『欽欽新書』에 나타난 중국과 조선의 법의학 세계*

高淑姬**

<目 次>

1. 들어가며
2. 『無冤錄』과 『欽欽新書』: 법의학과 인문학의 만남
3. 『無冤錄』과 『欽欽新書』에 나타난 법의학 세계 1
- 법의학의 정수, 검시 -
4. 『無冤錄』과 『欽欽新書』에 나타난 법의학 세계 2
- 법의학 정신, 인문학과 통하다 -
5. 나가며

1. 들어가며

모든 학문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특히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다른 학문에 비해 강하게 표출된다. 이러한 인문학의 인본주의는 살아 있는 자,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인문학적 인본주의 내지 휴머니즘이 드러나는 또 다른 학문으로 법의학이 있다. 법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이다.¹⁾ 법의학은 그 속성상 인문학과는 소통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2986).

** 중앙승가대학교 강사

1) 이윤성, 『법의학의 세계』, 살림, 2003년, 6~7쪽.

부재의 학문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궁극적 속성을 통해 인문학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즉, 법의학의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인문학 정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법의학의 정수는 검시로, 주검의 외관을 관찰하는 것이 檢案(postmortem inspection)이고 주검을 실제 해부하여 관찰하는 것은 剖檢(autopsy)이다. 오늘날의 검시는 부검을 지칭하지만, 전통사회에서의 검시는 검안을 의미하며 檢驗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엄격하고 공명정대한 검시행위와 그 과정이다. 이것이 인문학적 휴머니즘과 법의학적 휴머니즘의 소통의 장이다.

14세기 중국 원나라 때 『無冤錄』이 등장하고, 18세기 조선에서는 『欽欽新書』가 등장했다. 이 두 저서는 인문학과 법의학의 속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저자들이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책을 편찬했고, 법의학에서 다루는 검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검시의 측면에서 『무원록』과 『흙흙신서』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소송을 전제로 한 다양한 사회범죄이다. 사회범죄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충격적이어서 해결에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人命案이 있다. 바로 살인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범죄가 발생하면 일방의 소송이 제기되고, 사건을 맡은 담당관은 사건해결에 심혈을 기울인다.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거나 관련인들의 진술이 엇갈려서 종종 난항에 부딪힌다. 이 때 사건 해결의 열쇠는 피해자 즉 '주검'²⁾에 있다. 사건 담당관은 '주검'을 상세히 살펴 죽음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여 '주검'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누명을 쓴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게 된다. 비명횡사한 주검을 살피는 행위가 바로 검험, 즉 檢屍(postmortem examination)이다.³⁾

『무원록』은 완전한 체제를 갖춘 중국의 법의학서이다.⁴⁾ 『무원록』은 중국 공안

2) 죽은 사람의 몸을 지칭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屍體, 死體, 屍身, 송장, 주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논문에서는 순 우리말인 주검을 사용할 것이다.

3) 광의적 범주에서 검험은 檢屍에 해당되고, 협의적 범주에서는 檢案에 해당된다.

4) 중국 전통 법의학의 역사는 실제로 법의학서 출현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서양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에 출현하여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宋代에 법의학 방면의 지식이 축적되고 발전되어 다양한 법의학 관련 서적들이 등장한다. 『內恕

소설을 통해 그 면모를 드러내고, 실제 현실에서도 검시를 위한 실용전문서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살인사건 발생시, 사건 담당관의 검사와 그 과정 중에 『무원록』의 원칙과 내용들이 활용되기도 했다.⁵⁾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춘 검시 지침서 『무원록』은 중국에서 조선에 까지 전래되었다.⁶⁾ 이는 조선의 통치자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의학적 검시지침서로서의 『무원록』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435년(세종 17년)에 조정에서 『무원록』의 활용이 거론되었다.⁷⁾ 세종은 중국의 『무원록』을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선판 『무원록』으로 간행하고 주석 작업을 하도록 명령

錄』, 『折獄龜鑑』, 『棠陰比事』, 『平冤錄』, 『檢驗格目』 등이 당시의 법의학 관련 서적들이다. 이러한 법의학적 노력과 결과물을 바탕으로 동시기에 비교적 체계적인 최초의 법의학서 『洗冤集錄』이 서양보다 300년 정도 앞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뒤이어 元代에는 송대에 등장한 『세원집록』과 『평원록』, 『結案式』 등을 참고하여 그 중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 수정하고 첨삭을 가해서 일목요연하게 분류한 법의학 종합서 『無冤錄』이 王與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다.

- 5) 清代 순치계때 浙江巡撫를 역임했던 倭國器는 「問刑條議·七條通論(살인사건 해결과 검시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원칙을 제시한 글)」에서 『무원록』에 서술된 상처 관련 내용을 인용했다.
- 6) 고려시대에 이미, 1059년 중국에서 간행된 법의학 참고서 『疑獄集』 등이 출판되었던 사실로 보아, 송대의 『세원집록』, 『평원록』, 『결안정식』과 같은 법의학 서적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려 말에 元의 『至正條格』 등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어 동시기에 간행된 『무원록』 역시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1418년(태종18) 『의옥집』이 간행되었으며, 1384년 明에서 간행된 重刊本 『무원록』이 수입되어 검시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여전히 검시과정의 표준 지침서로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법의서들이 너무 어려워서인데, 특히 용어의 생소함은 가장 큰 장애였다. 왕여 지음, 최치운 외 주석,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사계절, 2003년, 14~15쪽.
- 7) 세종 원년(1419) 2월에 형조의 건의에 의하여 人命에 관계되는 중대사나 후일에 참고로 할 만한 公私文案에는 반드시 年·月·日을 적는 것을 恒式으로 삼게 되었는데, 형조에서 『무원록』의 '무릇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월을 명기하고 文案에는 去年, 今年, 前月, 今月, 當日, 此日과 같이 써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참고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무원록』은 적어도 조선시대 세종 전에 이미 필요한 경우에 참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만큼 인명 관계 사건 처리에 명확을 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후 『무원록』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12년(1430) 3월부터는 律學 取才의 경우에 『무원록』은 『大明律』·『唐律疏義』와 함께 시험 과목에 넣게 되었고, 검시는 율학 출신이 아닌 일반 관리들이 하는 것인데, 관리들이 검시에 밝지 못하며, 사소한 착오만 있어도 人命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吏科의 取才에도 『무원록』을 과하고 朝士도 『무원록』을 익히 배우도록 하게 되었다. 박병호, 『세종 시대의 법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년, 58~59쪽.

했다. 그 결과 1384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중간본 『무원록』을 저본으로 1438년(세종 20년)에 新註本이 탄생했다. 이후 신주본 『무원록』⁸⁾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법의학서로 재탄생했다. 『增修無冤錄』, 『增修無冤錄大全』, 『增修無冤錄諺解』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중국의 법의학서 『무원록』이 법의학 실용전문서적으로서 조선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조선판 『무원록』 시리즈 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저서가 있는데, 茶山 丁若鏞의 『欽欽新書』이다. 『흙흙신서』는 조선판 『무원록』 사례집이라 할 정도로 중국 법의학서 『무원록』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무원록』과 『흙흙신서』는 중국과 조선, 14세기와 18세기라는 시공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의 저작이며 산자와 죽은 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한 휴머니즘적 의지가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또한 『흙흙신서』에는 『무원록』에 기록되어 있는 검시 관련 조항들이 곳곳에 인용되어 있어, 두 저서의 불가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원록』과 『흙흙신서』에 나타난 법의학 세계를 통해 법의학 적 면모와 인문학적 경향을 살펴보고, 당시 사회범죄와 검시의 시공 초월적 동일성을 조명하는 데 있다.⁹⁾

8) 『新註無冤錄』을 말한다.

9) 본 연구대상 텍스트인 『무원록』은 최근 국내 중문학계에서 법의학과 중국소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중국 중문학계 관련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국내 여러 학계에서도 『무원록』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왕여의 『무원록』을 대상 텍스트로 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 수용되어 재탄생한 조선판 『무원록』 시리즈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무원록』은 여러 중국 법의학서 중 하나로 간주되어 상당히 간략한 소개와 일반적인 서술에 그쳤다. 주로 국내 국문학계, 사학계, 의학계, 사회학계 등의 시선이 국내에 유통되어 정착된 조선판 『무원록』에만 고착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결국, 일명 조선판 『무원록』에 대한 조명만 진행되어 그 원형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국 『무원록』에 대한 연구와 양자의 수용양상에 대한 다각도적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또 다른 연구대상 텍스트 『흙흙신서』는 국내 문학·사학·철학계에서 두루 연구가 이루어졌고, 형법을 위시한 法學史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관리 지침서로서 치국이나 다산의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조명되어 왔다. 이상 기준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무원록』과 『흙흙신서』에 대해 개별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두 저서의 연관성 탐구나 법의학과 인문학적 속성의 견지에서 연

2. 『無冤錄』과 『欽欽新書』: 법의학과 인문학의 만남

『무원록』과 『흙흙신서』에 나타난 법의학 세계를 통해 법의학과 인문학적 경향을 연구하려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 텍스트는 원대 王與의 『무원록』¹⁰⁾과 조선시대 정약용의 『흙흙신서』¹¹⁾이다.

우선 『무원록』은 중국의 전통 법의학서로 왕여(1261~1346)의 저서이다. 비교적 완전한 체제와 내용을 갖춘 검시 지침서로서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래되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¹²⁾ 왕여는 溫州출신으로 자가 與之이며 본래 법률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재임 중에는 소송 사건을 훌륭히 처리했다고 한다. 『무원록』은 이전의 법의학서와 원대의 다양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1308년에 등장했다. ‘無冤’, 즉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무원록』에는 왕여 자신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휴머니즘이 짙게 깔려있다.¹³⁾ 특히, 그는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서문에는 그의 인간애에 입각한 저술의 목적과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한나라 장석지가 정위가 되니, 천하에 원통함을 품은 백성이 없었다.
우정국이 정위가 되니, 백성들은 자연히 원망이 없게 되었다. 무릇 옥송은
중대한 일이므로 옥사를 처리하는 것은 실로 어렵고 옥사를 판결한다는

구를 진행한 논문은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넘어서서, 『무원록』과 『흙흙신서』의 긴밀한 연관성을 법의학의 프리즘을 통해 규명하면서 법의학과 인문학의 조화를 시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0) 원대 왕여의 『무원록』은 『無冤錄校注』(王與·楊奉琨 校譯,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년)를 연구 텍스트로 하며, 『신주무원록』(왕여 지음, 최치운 외 주석, 김호 옮김, 사계절, 2003년)을 보충자료로 활용한다.
- 11) 『흙흙신서』는 현대실학사의 『흙흙신서』(1999년)를 연구 텍스트로 하며, 역주 『흙흙신서』 1·2·3(1999년)를 보충자료로 활용한다.
- 12) 일본은 12세기에 바쿠후(幕府)정치에 아시카가시대(足利時代)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무원록』이 전해져서 이용되었고, 에도바쿠후(江戶幕府)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신주무원록』을 역술한 『無冤錄述』에 의존하여 검험이 이루어졌다. 강대영·강현옥·곽정식 외 9인 공저, 『법의학』, 정문각, 2007년, 18쪽.
- 13) 고숙희, 「조선시대 중국 실용전문서적의 전래와 수용 -『無冤錄』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2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4년, 236쪽.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옥사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경우에 오직 검사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니, 조그만 차이에도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험이 명확하지 않으면, 치옥이나 단옥을 잘하는 자라도 어쩔 도리가 없게 된다. 옛날 송혜보가 옥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실수가 잘못된 검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려하여 일찍이 세원록을 엮었고, 조일재는 또한 평원록을 엮었다.……내가 외람되게 안독의 소임을 맡아 역대로 초검과 재검의 어려움을 열람했다. 『세원록』과 『평원록』 두 가지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 서로 간에 덜어내고 추가할 것이 있었다. 곧 성부에서 내려 보낸 고시정식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근본으로 삼고, 같고 다른 것을 참고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편찬했다. 무릇 검험격례를 책 첫머리에 실었으니, 이를 따라 행한다면 거의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여 백성들이 자연 원통함을 품지 않을 것이므로 외람되게 무원록이라 이름 지었다.¹⁴⁾

이처럼 왕여는 『무원록』의 편찬의도와 과정 및 서명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무원록』이 본인의 순수 성과물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법의학서를 참고했을을 명백히 언급하고, 검시의 중요성과 엄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억울하고 원통한 백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원록』의 체제는 「論辯」, 「格例」, 「尸體檢驗」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변」에서는 今古驗法不同, 自縊字義, 溺死屍首男仆女仰, 檢驗用營造尺, 檢屍法物銀釵假偽, 中毒, 辦親生血屬, 食氣類之辨, 張知州辨明惡逆, 晝夜之分, 親老無待犯徒以上罪名, 婦人懷孕死屍, 病死罪囚 등에 이르는 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¹⁵⁾ 「격례」에서는 屍帳式, 屍帳例, 屍帳件作被告人盡字, 正

14) 漢張釋之爲廷尉, 天下無冤民, 于定國爲廷尉, 民自以不冤. 蓋獄, 重事也, 治獄固難, 斷獄尤難. 然獄之關於人命者, 唯檢尸爲至難, 毫釐之差, 生死攸繫. 苟定驗不明, 雖善於治獄斷獄者, 亦未如之何也已. 昔宋惠父念獄情之失, 由定驗之誤, 會編洗冤錄, 趙逸齋又訂平冤錄. ……予濫叨案牘之寄, 歷試檢覆之難. 因觀洗冤·平冤二錄互有損益. 遂以省部見降考試程式爲持循之本, 參攷異同, 分門編類. 凡檢驗格例, 序于卷首, 遵而行之, 庶幾謹之於始, 民自不冤, 僭目曰無冤錄.

15) 특히 '今古驗法不同' 앞부분에는 검시에 입각한 『무원록』의 편찬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법이 옛날에 적절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가 오늘 날에 편리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적합하도록 덜고 더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또한 인명이 귀중하므로 검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오늘 날 죽은 자의 상처를 검험하면서 매번 『세원록』과 『평원록』을 따르니, 만일 상사에서 보내 온 『결안정식』대로만 처리한다면 다른 책을 참고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이 『무원록』을 편술한 이유이다. (法有宜於古者, 未必皆

官檢屍及受理人命詞訟, 寒暑變動, 初復檢驗關文式 등의 17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¹⁶⁾ 「격례」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검시 원칙과 주의사항들이 잘 나타나 있다. 「논변」과 「격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명사건, 즉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수적 절차인 검시의 원칙과 검서관련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을 두루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시체검험」은 『무원록』의 중심 부분으로 구체적 상황에서의 실제 검시 방법과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檢覆總說과 驗法을 시작으로 여성과 낙태된 소아의 주검 검시부터 他物死, 勒死, 自縊死, 自割死, 毒藥死, 火燒死, 凍死, 杖瘡死, 壓死, 虎咬死 등 41가지 항목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검시 법과 주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험법 부분에서는 검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사건담당관이 검서관으로서 검시 장소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사건 상황 파악의 중요성, 검시에 활용하는 범물과 계절에 따른 범물 사용 방법, 주검에 대한 검시 순서, 검시 과정 중에 자세히 살펴야 할 사항들, 검시 후 검안작성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⁷⁾ 「시체검험」 부분에서 반드시 주목할 점은 법의학적 속성을 지니고 기술적 측면에서 검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 기본 정신은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인간애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 법의학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검시를 할 때, 주로 검안 위주 검시가 이루어졌다. ‘죽은 자의 원통함과 억울함 풀어주기’라는 가치를 내건 『무원록』에서 다루는 검시의 핵심 역시 검안이다. 왕여는 살인사건 관련 소송을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 검시가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사건을 조사하는 사건담당관의 공명정대함과 정확함, 엄격함도 아울러 강조했다.

왕여의 『무원록』과 마찬가지로 『흙흙신서』 역시 개인의 이름으로 편찬되어, 역

便於今。貴乎隨時之宜而損益之，且人命至重，檢屍最難。今檢驗屍傷，往往取則於洗冤·平冤二錄，至若上司降下結案程式，則失於參考。此無冤錄之所以編也。”

16) 「격례」 부분의 ‘屍帳式’에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시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모로, 모주, 모현, 모처에 모년월일 모시에 검험하기 위해 모인의 시체가 놓인 곳에 도착했다. 모자 제 몇 호 검안의 각 항목을 모두 적어 넣고, 생전에 치명한 원인을 결정하여 뒤에 기록한 후 감합한다.(某路某州某縣某處, 某年月日某時, 檢驗到某人屍形, 用某字幾號勘合書填定生前致命根因, 標注于後.)’

17) 고숙희, 「中國 傳統 法醫學으로 본 明代 公案小說」, 『中國小說論叢』 제40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3년, 55쪽.

대 중국과 조선의 판례를 제시하고 당시 조선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다산의 휴머니즘적 인간애를 표출하고 있다. 실로 조선판 『무원록』 사례집이라 할 만한 저서이다.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다.¹⁸⁾ 정약용의 자는 美鏞이며, 호는 茶山, 俟菴, 與猶堂, 菜山이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兵曹參知, 副護軍, 刑曹參議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與猶堂全書』 등 500여 권에 달한다. 이러한 저술을 통해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약용은 정조의 개혁정책 추진 당시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그러므로 그와 정조의 밀접했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정약용 이해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¹⁹⁾ 정약용은 22세에 회시에 급제하여 정조를 처음 만났고, 28세에 전시에 급제하고 초계문신이 되어 규장각에서 정조를 모시고 정치를 논했다. 당시 18세기 말 조선의 체제적 모순과 정치적 타락은 정약용의 애민의를 자극했다. 정조 18년(1794), 33세에 암행어사가 되어 여러 지방을 순시하면서 정약용의 애민의식은 극에 달했다. 『여유당전서』의 제 1집 『시문집』에는 총 1,31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고달픈 삶과 애환, 세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인도주의적 애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의식이 오롯이 투영된 저서가 바로 『흙흙신서』인 것이다.

『흙흙신서』는 전체 5부, 30권으로 이루어졌고, 1819년에 완성되어 1822년에 간행되었다. 『무원록』과 마찬가지로 人命案, 즉 살인사건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법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목에 명시된 ‘欽欽’은 바로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으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하는데 있어서 산 자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억울하면서 원통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약용의 휴머니즘적 의지가 담겨있기도 하다. 서문을 통해 정약용의 저술 동기와 책의 전체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8) 정약용 생애 관련 부분은 함규진의 『정약용: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다』(한길사, 2012년)와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했다.

19) 정조와 다산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함규진의 앞의 책 384쪽 「다산에 대해 묻고 답하기」의 '3. 정조와 다산의 관계는 어떠했나?' 부분에서 명쾌하게 다루어졌다.

내가 『목민심서』를 편찬하고 나서 인명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이 『흠흠신서』를 별도로 편찬했다. 경전의 교훈은 머리에 실어서 정밀한 뜻을 밝히고, 다음에 역사의 자취를 실어서 옛날의 사례를 드러내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경사요의」이며 3권이다. 다음에는 판결·보고·선고의 실례를 실어서 당시의 법례를 살폈으니, 이것이 이른바 「비상준초」이며 5권이다. 다음에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죄를 헤아려 형벌을 정한 사례를 실어서 차등을 분별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의율차례」이며 4권이다. 다음에 선대의 임금 때 군현의 공안 가운데 문사와 논리가 비루하고 저속한 것은 그 뜻에 따라 가다듬고 형조의 의론과 국왕의 판결은 삼가 조심스레 기록하되 간간이 내 의견을 덧붙여서 변론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상형추의」이며 15권이다. 내가 전에 황해도 곡산부사로 있을 때 왕명을 받들어 옥사를 다스렸고, 내직으로 들어와서 형조참의가 되어 또 이 일을 맡았었다. 그리고 죄를 받아 귀양살이하며 떠돌아다닌 이후로도 때때로 형사 사건의 정상을 들으면 또한 심심풀이로 형사 사건을 논하고 죄를 판정해 보았는데, 변변치 못한 나의 이 글을 끝에 붙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전발무사」로 3권이다. 이들은 모두 30권인데, 『흠흠신서』라 이름 지었다.²⁰⁾

서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체제에 따른 『흠흠신서』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사요의」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속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논했다. 아울러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 될 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했는데, 중국은 79건, 조선은 36건으로 모두 115건의 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했다. 「경사요의」 시작부분에서는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欽恤’을 제시했다.²¹⁾ 이 부분에는 정약용의 인명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표출되었

20) 余既輯牧民之說，至於人命，則曰是宜有專門之治，遂別纂爲是書。冕之以經訓，用昭精義，次之以史跡，用著故常，所謂經史之要三卷。次之以批判詳駁之詞，用察時式，所謂批評之雋五卷。次之以清人擬斷之例，用別差等，所謂擬律之差四卷。次之以先朝郡縣之公案，其詞理鄙俚者，因其意而潤色之，曹議御判，錄之唯謹，而間附己意，以發明之，所謂詳刑之議十有五卷。前在西邑，承命理獄，入佐秋官，又掌茲事。流落以來，時聞獄情，亦戲爲擬議，其無拙之詞，係于末，所謂剪跋之詞三卷，通共三十卷，名之曰欽欽新書。

21)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은 흠흠에 있다. 흠흠이란 그 사건을 조심스레 다루고 그 사람을 가련히 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한 형사사건 처리 방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되, 조금도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 더러 법률에 해당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교훈, 고사를 인용하여

다. 정약용에게 있어서 '흠휼'은 인도주의적 애민의식, 즉 인간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다. 「비상준초」에서는 살인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을 선별하여 해설하고 비평을 가했다.²²⁾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살인사건 문서를 모범 삼아, 문서작성에 있어서 신중하고 정확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의율차례」에서는 당시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이 부분에 선별된 판례들을 통해 법 적용의 엄격함과 공평무사를 지향하는 정약용의 관리로서의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상형추의」에는 정조가 심리했던 살인 사건 중 144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했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 관찰사의 題辭, 형조의 回啓, 국왕의 判付를 요약했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²³⁾ 정약용은 「상형추의」의 저술 의도를 명확히 언급하며, '疑獄', 즉 진상이 확실치 않아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상형추의」부분에 실린 살인관련 사회범죄에 관한 정약용의 의견과 평을 통해 그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8세기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발무사」에서는 정약용이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관직생활을 하던 중에 다루었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 유배지에서 접한 16건의 사

참작하는 자료로 삼아야 하니, 이에 경전이나 역사서의 중요한 뜻을 간추려서 가려 쓰도록 대비하겠다.(斷獄之本, 在於欽恤. 欽恤者, 敬其事而哀其人也. 然且斷獄之法, 有經有權, 不可膠柱. 其或法律之所未言者, 宜以古訓·古事, 引之爲義, 以資參酌, 茲摭經史要義, 以備採用.)

22) 그 체제는 대체로 서로 비슷하나 사료문을 써서 늘어놓아 말하고, 일관된 논리를 펴서 모두가 짜임이 있고 정밀하며 엄격하여, 우리나라 제사와 첩보의 속되고 지루하여 실증을 일으키는 경우와는 다르다. …… 다음에 비판, 신상의 여러 가지 사례를 순서 있게 배열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갖추어 놓았으니,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자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其體裁大略相似, 有用四六駢語者, 有單股說理者, 總皆典雅精嚴, 非如吾東題牒之鄙俚支離爲可厭也. ……次列批詳諸文, 以具衆情, 掌獄者, 庶有取焉.)

23) …… 형사사건을 살피는 사람들이 진상이 확실치 않은 형사사건을 만날 경우, 이 재판기록을 참고로 하여 성인의 경전과 같이 원용한다면 하고 생각하여, 드디어 이를 다시 모아서 나누고 나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형추의」를 만들어 후세 사람을 기다린다.(……因念按獄之人, 或遭疑獄, 宜執此案引援如聖經, 遂復彙分, 或附妄論, 爲「祥刑追議」, 以俟來者.)

례에 대해 소개하고 비평과 해석을 가했다.²⁴⁾ 『흙흙신서』의 정수는 「상형추의」와 「전발무사」에 있다. 곳곳에 『무원록』의 실제 검시 관련 항목인 「시체검험」부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여 『무원록』의 영향 정도와 두 책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형추의」와 「전발무사」의 시작 부분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발로된 애민의식과 억울함과 원통함 제거를 향한 강한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²⁵⁾ 정약용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고 형식적 경향을 띠는 것이 律文에 밝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력의 부재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에 따라 인본주의적 생명존중사상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인식하면서, 억울함 없는 사회구현을 위해 살인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곳이 바로 『흙흙신서』 탄생의 주요 배경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흙흙신서』는 인도주의적 애민정신과 관리로서 사건 진실 규명에 대한 정약용의 강한 의지적 발로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24) 고숙희, 「18세기 한중 공안서사물에 나타난 'Justice' -『鹿洲公案』과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4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4년, 97-99쪽.

25) 꿈꿈이 생각건대, 우리나라 정조대왕이 왕위에 있는 지 25년에 형사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고 죄수를 불쌍히 여긴 어진 정치는 모든 임금을 뛰어넘어, 자세하고 깊어 반복하여 마음 쓰셨으니, 살리거나 죽임에 있어 억울함이 없었다.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가 앞뒤의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결정들을 모아 『상형고』 100권을 편찬하니, 전날 한림으로 있을 때 대강 훑어 본 적이 있다. …… 따라서 형사 사건을 살피는 사람들이 진상이 확실치 않은 형사 사건을 만날 경우, 이 재판 기록을 참고로 하여 성인의 경건과 같이 원용하게 한다면 하고 생각하여 드디어 이를 다시 모아서 나누고 나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형추의」를 만들어 후세 사람을 기다린다. (粵惟我正宗大王臨御二十五年, 欽恤之仁, 度越百王, 服念精深, 生死無冤. 史臣聚前後御判爲祥刑考一百卷, 舊在館閣, 曾已較閱, …… 因念按獄之人, 或遭疑獄, 宜執此案引, 援如聖經, 遂復彙分, 或附妄論, 爲祥刑追議, 以俟來者. 「祥刑追議」)
 옛 사람은 형사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촛불 심지를 여러 번 끊어 불을 밝혔다. 성길이 촛불을 아내에게 잡게 하고 눈물을 흘린 일 등은 대체로 훌륭한 품격을 갖춘 일이다. 내가 곡산 부사로 있으면서 다시 임금의 명령으로 감사에게 차출되어 억울한 형사 사건을 조사 심리했고, 정조 임금의 알아주신 은혜를 입어 형조참의로 들어와 서울과 지방의 형사 사건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했었다. 아주 먼 시골로 유배되었던 때에는 옛날의 일이 오히려 생각났고 그때마다 살인사건으로서 의심스러워 밝히지 못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문득 헤아려 계획을 세우고 의론해 본 바 있었는데 모두 약간 건이 된다. 이제 순서에 따라 배열해 붙이고 이름 하여 「전발무사」라 했는데, 모두 3권이다. (古人斷獄, 燭跋屢剪, 如盛吉秉燭垂泣, 蓋盛德事也. 余在西邑, 再蒙憲批, 查理冤獄, 因荷先朝知照, 入爲刑曹參議, 疏理京外之獄. 旣流落窮荒, 猶思宿昔, 每聞人命之獄, 疑晦不白, 輒有擬議, 共若干首. 今附編次, 名之曰, 剪跋燕詞, 共三卷. 「剪跋燕詞」)

『무원록』과 『흠흠신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성을 지닌 저서이다. 개인 명의로 지어진 책이며, 법의학과 인문학의 속성을 지녔고, 검시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저서는 살인사건 해결의 관건인 검시를 주로 다루면서 저자의 혹은 동시대의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부분은 바로 『무원록』의 「시체검험」과 『흠흠신서』의 「상형추의」와 「전발무사」이다. 아울러 『무원록』은 법의학서로서 조선에 끼친 파급효과가 크며, 『흠흠신서』 등장에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3. 『無冤錄』과 『欽欽新書』에 나타난 법의학 세계 1 - 법의학의 정수, 검시 -

왕여의 『무원록』은 조선의 법의학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초기에 『신주무원록』의 간행을 시작으로 일련의 관련 법의학서가 등장했다.²⁶⁾ 이 중 정약용의 『흠흠신서』는 조선판 『무원록』의 완정본이자, 중국 『무원록』의 조선판 사례집이라 할 만하다. 특히 『흠흠신서』의 「상형추의」와 「전발무사」 부분은 조선판 『무원록』 사례집으로 손색이 없다.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검시내용과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무원록』의 다양한 검시항목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본 場에서는 『무원록』의 「시체검험」과 『흠흠신서』의 「상형추의」와 「전발무사」

26) 이 시기에 중국의 법의학서 『무원록』 역시 관심 대상이 되어 실용전문서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435년 세종 17년에 『무원록』의 활용이 거론되어, 세종은 중국의 제도와 상황을 기반으로 저술된 『무원록』을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선판 『무원록』으로 간행하고 주석 작업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 결과 崔致雲 등을 중심으로 이 작업에 참여한 학자들은 1384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중간본 『무원록』을 저본으로 『세원록』과 『평원록』을 직접 대조하여 1438년 세종 20년에 新註本을 완성했다. 이후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법의학의 필요성에 따라 1748년 영조 24년에 『增修無冤錄』이 간행되었다. 또한 정조 때에는 『增修無冤錄大全』과 『增修無冤錄諺解』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중국의 법의학서 『무원록』이 조선시대에 법의학 실용전문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숙희, 「조선시대 중국 실용전문서적의 전래와 수용 -『無冤錄』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2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년, 234쪽.

를 중심으로 중국과 조선의 법의학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로 두 저서에 나타난 법의학의 정수라 할 만한 검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왕여의 『무원록』에는 주검의 안색과 상처를 살피는 檢案이 검시의 주된 방법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전통시대에 행해진 가장 대표적 검시 방법이다. 왕여는 「시체검험」 부분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주검을 다룰 경우의 유의사항을 40여 가지 이상 언급하며 검시를 맡은 담당관의 신중함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시체검험」은 구체적인 검시 항목 제시에 앞서 ‘檢覆總說’과 ‘驗法’으로부터 시작된다. ‘복검총설’에서는 초검과 복검의 행정적 절차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검시 방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험법’은 주로 검시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검시에 사용되는 法物²⁷⁾과 구체적 활용방법, 주검을 다루는 방법, 머리서부터 시작되는 검시 순서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시체검험」 부분에서 다루어진 검시 항목은 상당히 다양하다. 여성의 검시, 낙태된 소아 시체의 검시, 목 졸려 죽은 경우, 스스로 목 매 죽은 경우, 익사하거나 몸을 던져 죽은 경우, 서로 구타 후 익사한 경우,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경우, 칼날 등에 살해된 경우, 칼에 찔려 죽은 경우,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주먹이나 손발 등에 의한 구타사, 辜限내에 병사한 경우, 스스로 베고 죽은 경우, 독을 먹고 죽은 경우, 불에 타 죽은 경우, 끓는 물에 데어 죽은 경우, 병환으로 죽은 경우, 아사, 장을 맞아 죽은 경우, 죄수가 심문받다가 죽은 경우, 놀라서 죽은 경우, 부딪쳐 죽거나 실족해서 죽은 경우, 압사, 우마에 밟혀 죽은 경우, 수레에 치여 죽은 경우 등 41가지에 달한다. 각 항목 마다 상세한 검시방법을 기록해 놓았다. 여성에 대한 검시를 예로 들어본다.

처녀성 여부를 검험할 때는 주검 주위 사방을 모두 측정하여 기록한 후
밝고 평평한 곳에 옮겨 산파에게 중지 손톱을 깎아 버리고 솜을 손가락에
감아서 묶고, 먼저 죽은 이의 모친과 친숙 및 이웃 부녀자 두 세 사람이 함

27) 검시에 활용되는 도구를 法物이라 하며, 은비녀·지게미(槽)·초(醋)·파(蔥)·천초(椒)·소금(鹽)·흰 매실(白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도구들은 현대적 법의학 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정밀성과 과학적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나, 당시로서는 주검의 사인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계 검험에 참가하게 한 후 산파에게 숨으로 쓴 중지를 음호 속에 넣어 검은 핏자국이 있으면 처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녀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처럼 닦아내며 법물로 덮어 두었다가 검시를 진행한다.²⁸⁾

여성에 대한 검시 항목에서는 구체적 검시가 진행될 경우 다른 항목과 달리 수치스러움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를 제시하고²⁹⁾ 상세한 검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인문문에 언급된 처녀성 여부 확인방법 외에 잉태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도³⁰⁾ 살펴볼 수 있는데, 현대의 과학적·의학적 시각에서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대에는 민간에서 주로 통용되던 방법이였음을 알 수 있다.

「시체검험」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검사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살인사건의 경우의 수와 검시 방법을 세세하게 다루었다. 勒死, 즉 목 졸려 죽은 경우를 예로 살펴보도록 한다.

목 졸려 죽은 경우, 주검은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며, 목 위에 줄린 흔적이 검게 나타나고 둘레 몇 촌에 깊이와 너비는 몇 푼에 달한다. 식기상이 꺼지고 목에 액흔이 감돌아 교차하면, 이는 목 졸려 살해된 것이다. 질병 때문에 스스로 목 졸라 자살한 경우, 주검은 두 눈을 감고 입술이 벌어져 이가 드러나고, 남에게 목 졸려 죽은 주검은 목 아래 끈이 감돌아 교차하고, 손가락과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다. 남에게 구타당한 후 끈으로 목 졸려 죽은 경우, 목 졸린 곳 숨통 아래에 검은 액흔이 6,7촌 정도여서 남에게 목 졸려 살해된 경우, 시체가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두 주먹을 쥐지 않고, 무릇 목 졸려 죽은 자는 반드시 주검의 사방을 살피고, 또 무엇인가에 의해 긁힌 부위가 있는 지 살피야 한다.³¹⁾

28) 驗是處女不是處女，打量箭下四至訖，捏出光明平穩處，令收生婆剪去中指旨甲，用綿扎，先勒死人母親及血屬并隣婦二三人同看驗，是與不是處女，令收生婆以中指入產門中，有黯血即是，無卽非。次如先洗電驗屍。

29) 驗婦人不可避羞。

30) 여성이 잉태한 것이 분명치 않은 데 사망한 경우, 검험 후 산파에게 배 안을 검사하여 잉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잉태한 경우, 심장 아래에서 배꼽 있는 데 까지 손으로 두드려 보면 鐵石처럼 단단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드럽다. 또한 산파를 시켜 산문 안에 異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婦人有胎孕不明致死者，檢驗後勒收生婆驗腹內委實有無胎孕。若有胎孕，心下至臍肚，以手拍之，堅如鐵石，如無卽軟。又勒收生婆定驗產門內有無他物。)

勒死는 현대 법의학에서 질식사에 해당된다. 「시체검험」에서는 주검이 목 졸려 죽은 경우에 관해 일반적 질식사의 현상과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질식사의 구체적 현상, 해당 검시방법을 상세히 서술했다.

현실사회에서 개인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대립 양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타이다. 이 구타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으로 그칠 수도 있으나, 갈등 양상이 확대되면 살인사건으로 변환되기 쉽다. 「시체검험」에서는 구타사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몽둥이에 맞아 죽은)주검은 눈이 열리고 손이 흐트러져 있으며, 두발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지 않고, 온몸에 가벼운 상처 이외에 모처에 하나의 상처가 있으니 길이와 너비가 어느 정도 되며, 이는 요해처와 관련이 있다. 검험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면 생전에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것이다.……여러 사람이 구타를 한 경우, 치명적인 상흔을 확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만약 죽은 자의 몸에 두 군데의 상흔이 있어서 모두 치명적인 상처이고 이 두 상흔이 한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두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한 사람은 췌값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벗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상흔 중에서 가장 심한 부분을 살펴서 치명의 원인으로 삼아야 하는 법이다.³²⁾

구타사는 棒毆死 항목으로, 몽둥이나 나무, 주먹이나 발에 의해 구타당해 죽은 경우이다. 棒毆死는 넓게는 현대 법의학의 鈍器損傷중 挫裂創에 속한다. 「시체검험」에서는 구타사와 관련하여 구타당한 주검의 일반적인 상태, 상흔의 종류와 정도 외에도 위장된 구타사 구별법, 구타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에 대해 언급했다. 구타에 사용된 도구로는 쇠채찍, 쇠자, 도끼머리 부분, 칼등, 흥두깨, 몽둥이, 말채찍, 장작, 벽돌, 돌, 기와, 굵은 베로 짠 신, 베를 바닥에 대어 기운 신, 가죽신,

31) 勒死, 本屍口開眼瞪, 項上勒痕黑色, 圍圓長若干寸, 深·闊若干分. 食氣顛榻, 項痕交匝, 委是被人勒死. 因患自勒死, 其屍兩眼合, 脣皮開露齒, ……被人勒死, 則項下索子交過, 并手指甲抓損. 被人打損以繩勒死者, 其屍被勒處喉下黑跡只可六七寸以來, ……被人絞勒喉下死者, 其屍口眼開, 兩拳散, ……凡被勒身死人, 須看觀屍身四畔, 有扎磨蹤跡去處.

32) 本尸眼開手散, 頭髮寬慢. 皮不脹, 除沿身輕傷外, 某處有傷一處, 長闊若干分寸, 此係要害去處. 驗是生前棒毆身死. ……聚衆打人, 最難定致命痕. 如死人身上有兩痕皆可致命, 此二痕若是一人下手, 則無害, 若是兩人, 則一人償命, 一人不償命, 須於兩痕中斟酌最重者爲致命.

짧은 등이 있다.

정약용 『흠휼신서』의 「상형추의」와 「전발무사」에도 법의학의 정수인 검시 관련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상형추의」와 「전발무사」는 실제 살인 사건 사례집으로, 곳곳에서 검시와 관련하여 왕여의 『무원록』을 언급한 부분이 상당수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상형추의」는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위해 덧붙인 논의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형벌 적용을 위해 검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검시과정이 신중한 사건 판결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144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정약용은 144가지 살인사건에서 검시와 관련하여 『무원록』 「시체검험」 부분을 빈번하게 인용했다. 이런 현상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무원록』 활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약용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형추의」에서 다루어진 사건들의 순서를 편의상 번호로 표기하여, 『무원록』이 인용된 사건을 대략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4, 7, 10, 11, 16, 20, 22, 23, 24, 26, 27, 30, 32, 34, 39, 41, 42, 44, 45, 47, 48, 49, 57, 58, 63, 70, 76, 78, 81, 86, 87, 90, 92, 111, 121, 13, 137, 138, 139, 141, 142 등이 해당된다. 이 중 4번째, 7번째, 16번째 사건을 예로 들어 본다.

또 살펴보건대, 『무원록』의 시장목록에 사람의 앞면과 뒷면의 명칭이 각기 달라 앞면에는 위아래 턱만이 있으나 뒷면에 목이 있으니, 항경 곧 목을 논하려면 뒷면에서 논해야 할 뿐인데 저 앞면에서 목의 상처를 논했으니 옳겠는가. 만일 그 앞뒤의 뼈가 모두 부러졌다면 마땅히 함해 곧 턱이 부러졌다고 말해야 함에도 어찌 이름 붙여 말하기를 목이라 했던 말인가.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형추의」(首從之別四: 兩人共毆 護強指弱 根由督債 實因折項)³³⁾

이 사건은 洪川 거주 백성 具時奉 등이 朴以同을 죽인 사건이다. 두 사람이 함께 구타했는데 가해자 중 강자는 비호하고 약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이 펼쳐

33) 又按無冤錄屍帳目錄, 仰面合面, 名色各殊, 仰面但有額顙, 合面乃有項顙, 欲論項顙, 則論之於合面而已, 先於仰面, 徑論項顙之傷, 可乎. 若其前後之骨皆折, 則宜言額顙之折骨, 何得名之曰項顙乎. 名不可不正也.

졌다. 정약용은 이 사건에 대해 『무원록』의 屍帳目錄을 언급하며 검시를 할 경우 주검의 앞뒷면 명칭이 다른 부분을 반드시 주지하여 屍帳式을 명확히 작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무원록』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의 몸 위에 두 다친 상처가 있고, 모두 죽게 될 수 있는 경우, 이 두 상처가 만일 한 사람의 범행인 때는 관계가 없으나 만일 두 사람인 때에는 한 사람은 목숨으로 보상하고, 한 사람은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으므로 모름지기 두 상처 가운데 참작하여 가장 깊은 것을 죽게 된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제 이 이맹삼의 상처는 이마와 옆구리에 있으며, 이 두 상처는 모두 죽게 될 수 있는 상처입니다. 「상형추의」(首從之別七: 兩人共毆 一椎一踢 根由使氣 實因被踢)³⁴⁾

이 사건은 長鬚에 거주하는 백성 張小斤 등이 李孟三을 죽인 사건이다. 본래 두 사람이 구타하여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때 한 사람은 몽둥이로 또 다른 사람은 발로 구타했다.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확한 검시에 입각한 주범과 종범의 명확한 구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무원록』에 이르기를, 살이 검푸르고 살갗이 찢히고 살이 터졌으면 죽게 된 상처라 한다 했으니, 이제 이 명치와 불알 두 곳의 살빛이 검푸름은 모두 같고, 살갗과 살이 터지지 않음도 모두 같다면 그 다친 자국의 깊고 얕음도 또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굳이 명치가 죽은 원인이라 할 것이 무엇인가. 「상형추의」(首從之別十六: 兄弟同犯 互相推諉 根由使氣 實因被蹴)³⁵⁾

위 인용문의 줄 친 부분이 원문에는 ‘法曰’로 표기되어 있다. 法은 바로 『무원록』을 의미하며, 이곳에서는 『무원록』의 구타사 항목을 언급하고 있다.

34) 臣謹案, 無冤錄曰, 如死人身上有兩痕, 皆可致命, 此兩痕, 若是一人下手, 則無害, 若是兩人則一人償命, 一人不償命, 須於兩痕中, 斟酌最重者爲致命, 今此孟三之傷, 在於額顛脅肋, 是兩痕皆可致命者也.

35) 法曰, 肉青黑, 皮破肉綻, 爲致命之傷, 今此心腎二處, 肉色之青黑皆同, 皮肉之不破皆同, 則其傷痕之深淺, 亦無彼此, 何必曰心坎是實因乎.

「전발무사」 역시 17가지 살인사건과 검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상형추의」와 마찬가지로 『무원록』의 검시 조항이 인용되고 있다. 「전발무사」에 기록된 사건들의 순서를 편의상 번호로 표기하여 관련 사건을 찾아보면, 2, 3, 7, 10, 11, 14, 16, 17 등이 대표적이다. 2번째 사건 관련 ‘송화현 강문행 형사 사건을 조사해 아뢴 발사(松禾縣姜文行查啓跋辭)’에서는 『무원록』의 내장계통 관련 조문이 언급되었고,³⁶⁾ 3번째 사건 관련 ‘곡산부 강도 김대득의 체포조사 판결장(谷山府強人金大得跟捕查決狀)’에서는 『무원록』에 기록된 현장조사 방법이 채용되었으며,³⁷⁾ 7번째 사건 관련 ‘강진현 조규운의 자식을 위한 복수사건에 대한 비평(康津縣趙奎運爲子復讐案批評)’에서는 시체검험서 작성의 신중함을 언급하며 『무원록』 「屍帳式」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다.³⁸⁾ 10번째 사건 관련 ‘강진현 장소사 초검안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擬康津縣張召史初檢案跋詞)’에서는 여성에 대한 검시와 유산을 중심으로 『무원록』 조문을 언급했고,³⁹⁾ 11번째 사건 관련 ‘강진현 정절부의 초검안 발사(康津縣鄭節婦初檢案跋詞)’와 14번째 사건 관련 ‘강진현 김씨 집의 아들 재검안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擬康津縣金家子覆檢案跋辭)’에서는 『무원록』의 ‘勒死’ 조문이,⁴⁰⁾ 16번째 사건 관련 ‘양근군 이대철 합동 조사장 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擬楊根郡李大哲同推狀題辭)’에서는 시체검험서

36) 鄭述仁曰, 無冤錄, 明有內損之條, 豈可以一時禁令, 遂廢內損之名乎, 其跋文措辭論理, 斷以內損, 監司亦可之.

37) 苟非親至其地, 無以覈其實. 於是以檢地爲名(無冤錄 有檢地法), 卽地馳往, 左右交諫, 皆不聽. 十四日, 親至門巖洞口金五先致命處, 設計鉤覈, 執得永豐人李好天之子李奉位(年十六), 李昌仁(年十五)以來, 處之密室, 令中軍姜鎮周 多買綵組蜜餌, 誘之使言, 乃得其實.

38) 無冤錄仰面圖列書咽喉者, 或值刺殺之獄, 欲驗刃入深淺及喉筒之或連或斷也. 至如毆打外傷之屍, 其屍帳目錄, 不當開列咽喉. ……夫檢狀者, 人命死生之判也. 隻字片言, 不宜放忽, 而其鹵莽蔑裂如此, 不亦難乎. 檢官委之胥吏, 監司委之神將, 蒙然而報之, 蒙然而題之, 順且無事, 習以爲常, 不亦荒乎.

39) 관련 원문은 주)43에 제시되어 있다.

40) 特其絕命, 已過於六日, 變動多起於諸部. 所謂結締之交, 未有明的之痕(是乎乃), 詞證既已歸一, 形法又皆脗合, 自勒二字, 無容更議. 雖然苟云自勒, 將無正犯, …….(康津縣鄭節婦初檢案跋詞)

跋云(爲等如),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今此屍首, 如法按驗(是乎則), 口開眼突 喉塌手握, 皆與法文中被勒形證 一一符合, 況其項後交匝, 明有結締之痕 喉下一路, 宛是赤黑之色, 而紡車之索, 落在本處, 其爲被勒明白(乙仍于), 實因(段)以被勒致死開錄(爲乎紿). (擬康津縣金家子覆檢案跋辭)

에 나타난 결정적 상흔 두 부분을 언급하며 『무원록』 관련 조문을 제시하고 당시 검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⁴¹⁾ 마지막, 17번째는 '주검을 파내 검사하는 방법을 되풀이하여 밝힌 하교에 관한 발문(申明掘檢之法 教文跋)'으로 前代 숙종과 영조의 매장된 주검 관련 하교가 기록되어 있다. 숙종은 정확한 사건관결을 위해 직접 관을 열어 검시하고 『무원록』 조문을 반드시 채용할 것을 하교했고, 영조는 시체검험에서 비록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 해도 증언이 구비되었으면 추가 검시가 부당하므로, 이미 매장한 경우 가급적이면 검시하지 말 것을 하교했다.⁴²⁾ 정약용은 이 부분에서 관을 열어 검시하고 무덤을 파서 검시하는 것은 『무원록』에 명기된 것이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법률이라고 평하며 어떠한 살인 사건이든 즉각적 검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10번째 사건을 예로 들어보도록 한다. 10번째의 '강진현 장소사 초검안 발사를 추측해 판단하다'에는 『무원록』 「시체검험」 중 태아 죽음 관련 항목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 시체 검험서는 법대로 검험했으나 다친 자국은 애초에 하나도 없었고, 죽게 된 것은 얼마 안 되어서이니, 태아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하더니, 형태와 증세로 말하면, 위로 명치에서부터 아래로 아랫배까지를 손으로 두드리니 굳기가 쇠나 돌과 같았고, 핏물과 똥물이 산문으로부터 흘러나와 산파가 채취해 검사했으나 다른 물체는 없었으니, 『무원록』의 여러 조문을 고찰해도 분명한 태아의 다침이며,……. 「전발무사」(擬康津縣張召史初檢案跋詞)⁴³⁾

- 41) 此獄屍帳，厥有二傷，一眉角被觸也，一腰眼被踢也。初檢覆檢，皆以腰眼歸重，皆以被踢爲實因，則眉角一款，姑舍之，腰眼被踢，爲此獄之肯綮(是如乎)，腰眼既係速死之處，紫黑又是致命之傷，則此法文所謂致命之傷，當速死之處者也。夫以致命之傷，當速死之處，則必其被傷之初，氣絕神昏，不能復振(是去乙)。今考初覆檢，苦主之招，一何相反(是喻)。
- 42) 昔我肅廟之教，有曰，殺獄之最緊最重者，莫如檢覆，間有外方守令任意增減，獄事遷就，至于數十年不決而瘐死獄中者，自今以往，該官必親自開檢，一從無冤錄，毋或有難明未盡之患，亦惟我寧考之教，有曰，檢驗雖不實，詞證俱備，則不當追檢，況已埋者乎。周文其猶掩骼，今則至於白骨檢驗，予則曰，當之者，無異再被殺越，或有不償命者，殘忍莫甚。此後殺人之匿埋者，依例檢驗後，自官埋置，其他已瘞者，勿檢，大哉聖人之言也。
- 43) 今此屍帳，如法案驗，而痕損則初無一點，致命則不踰半刻，如非胎傷，其死無名(是如乎)，以言乎形症則上自心坎，下至臍肚，以手拍之，堅如鐵石(是遣)，血水惡汁，流出產門而產婆探驗，亦無他物，考諸法文，明是胎傷(是乎脉)…….

밑줄 친 『무원록』 부분은 원문에서는 ‘法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무원록』의 여성과 태아 죽음 관련 검시 항목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무원록』 「시체검험」 중 여성의 검시 항목을 살펴보면, 잉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과정이 위 인용문에 제시된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 『무원록』의 「시체검험」과 『흠흠신서』의 「상형추의」·「전발무사」에 나타난 중국과 조선의 검시 관련 내용을 통해 두 법의학서의 검시 원칙과 내용의 연관성 및 법의학적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4. 『無冤錄』과 『欽欽新書』에 나타난 법의학 세계 2 - 법의학 정신, 인문학과 통하다 -

법의학의 기본 정신은 인간에 대한 주된 관심에 있다. 이는 바로 법의학과 인문학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왕여와 정약용은 관리로서 전통시대 법의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했다. 이들의 인간에 대한 관심, 즉 휴머니즘은 두 연구대상 텍스트의 제목인 ‘무원’과 ‘흠흠’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목숨과 연관된 살인사건에 대해 ‘원통함, 억울함의 제거’를 의미하는 ‘무원’과 ‘삼가고 또 삼가는 태도’를 지향한 ‘흠흠’이라는 책은 분명 휴머니즘적 발로이다. 이처럼 서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된 그들의 휴머니즘적 경향은 인간애와 생명존중사상이 그 중심을 이룬다.

본場에서는 『무원록』과 『흠흠신서』에 나타난 왕여와 정약용의 인문학 정신을 밝혀내고자 한다. 『무원록』과 『흠흠신서』는 법의학적 정체성이 극명한 편이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생명의 귀중함과 인간애를 여실히 표출하여 인문학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무원록』과 『흠흠신서』에 드러난 저자의 인간애와 애민의를 중심으로 법의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살필 것이다.

먼저, 왕여의 『무원록』에는 관직생활을 책임하며 매번 맡은 살인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한 왕여의 경험과 사건담당관으로서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구체

적인 검사항목을 다루고 있는 「시체검험」 부분은 다양한 살인사건과 정확하고 상세한 검시 과정 서술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시체검험」은 실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주검을 살펴야 하는 검시의 경우의 수를 41가지나 설정하여 실제 검시 방법과 과정, 검시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毒藥死’를 예로 들어 본다.

독은 먹고 죽은 경우, 검시할 때 은비녀를 사용하는데, 조각수로 씻은 후 주검의 입 안과 목구멍에 집어넣고 종이로 밀봉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꺼내서 청흑색이 되었으면 재차 조각수로 씻어내는데, 그 색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는 바로 독약사이다. 만약 독의 기운이 없다면 그 색은 선명한 흰색이 된다. 또 흰밥 한 덩어리를 죽은 사람의 입 안 목구멍 속에 집어넣고 종이로 덮어 한두 시간 지난 후, 밥을 꺼내 닭에게 먹이는데 닭 또한 죽으면 바로 독약사이다. 스스로 독을 먹거나 중독된 경우는 생전에 음식물을 먹어 독기가 내려가 창자로 들어가면 검시해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 바로 향문 안을 시험해 보면 그 색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무릇 독을 먹고 죽은 경우, 시체는 입과 눈을 크게 벌리고, 안색은 검붉고 질은 검은 색이거나 청색이며, 입술은 검붉고 질은 흑색이고, 수족과 손톱·발톱은 모두 검푸르며, 입·눈·코·귀 사이에 간혹 피가 나와 있다. 독살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비녀로 시험을 해보면 검은색으로 변하니 바로 이런 경우이다.……. 독약을 먹은 경우, 혹 즉시 발작하거나 혹 먹은 당일 조만간에 발작하는데, 약의 성질이 완만하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발작한다.⁴⁴⁾

전체적으로 「시체검험」 ‘독약사’ 항목에서는 독약사의 다양한 경우의 수와 주검의 상태, 실제 상황에서의 검시방법과 과정을 상세하고 기록하고 있다.⁴⁵⁾ ‘독약사’

44) 凡服毒死, 屍口眼多開, 面紫黯或青色, 脣紫黑, 手足指甲俱青黯, 口·眼·耳·鼻間有血出, 中毒亦然.…….服毒藥, 或即時發作, 或當日早晚發作, 其藥慢或一兩日發作.……. 服毒死, 驗時用銀釵, 以皂角水揩洗過, 探入死人口中喉內, 以紙密封, 良久取出, 作青黑色, 再用皂角水揩洗, 其色不去, 卽是. 如無, 其色鮮白. 又驗時將白飯一塊入死人口中喉內, 用紙蓋一兩時辰, 取出飯與鷄喫, 鷄亦死, 卽是. 服毒·中毒人, 生前喫物壓下, 入腸臟內, 試驗無證, 卽自穀道內試, 其色卽見.

45) ‘독약사’ 외에 다른 검시 항목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자액은 들보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하며, 주검의 두 다리가 허공에 매달리고 혀가 나오며 목에 액흔이 둘러쳐져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생전에 자액으로 죽었음을 살필 수

부분에서는 독약사 당한 주검의 일반적 현상을 서술한 후, 다양한 중독 원인을 언급하면서 각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검의 Dying message를 세세히 기록했다. 중독의 원인은 벌레, 과일, 金石藥, 鼠莽草, 砒霜, 野葛, 金蠶 등에 의한 것으로, 각 경우에 따라 주검의 중독 현상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는 다양한 독약사 주검의 검사방법 중 은비녀를 이용하거나 飯鷄法을 활용한 독약사 여부 테스트에 대해 꼼꼼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왕여의 '無冤' 지향의 의지, 법의학적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법의학자적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주검의 죽음 당시 상황과 과정을 재구성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없게 하려는 왕여의 면모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왕여는 「논변」 '今古驗法不同'에서 '법이 옛날에 적절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두가 오늘 날에 편리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적합하도

있다.……무릇 자택한 사람을 검시할 경우, 우선 신고한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언제 주검을 발견했는지, 바로 풀어서 구했는지의 여부, 관청에 고발한 시점을 물어본다.(量得梁高幾尺以上, 其尸兩脚懸空, 舌出, 項痕不匝, 驗是生前自縊身死. ……凡驗自縊人, 先問元申人, 其身死人是何色目人, 見時早晚, 曾與不曾解下救應, 申官時早晚.) '自縊死' 본 시체는 입과 눈을 모두 닫고, 두 손을 주먹 쥐고, 살빛은 누렇게, 머리털이 뭉쳐 있으며, 목에 상처가 한 곳 있고, 길이는 약간 촘이며, 깊이는 약간 풀이며, 식기장이 끊어져 있으니, 검시를 해보면 생전에 칼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은 것을 알 수 있다.…… 자형한 사람을 검시할 때 우선 원신인에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때가 언제이며, 어떤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했는지, 어떤 사람이 와서 보았는지 물어본 후, 곧 죽은 사람의 나이가 몇이며 생전에 왼손을 썼는지 오른손을 썼는지 물어본다.(本屍口眼俱合, 兩手拳握, 肉黃髮聚, 項上有傷一處, 長若干寸, 深若干分, 食氣嚙斷, 驗是生前以刀自割身死. ……驗自刑人, 卽先問元申人, 其身死人是何色目人, 自刑時或早或晚, 用何刃物, 若有人來認識, 卽問身死人年若干, 在生之日使左手·使右手.) '自割死'

본 주검은 피부가 모두 타고 살이 문드러졌으며, 손과 발을 모두 오그리고 있고, 입·코·귀 안에 모두 그을음과 재가 들어 있으니 이는 생전에 불타 죽은 것이다. …… 주검이 불속에 있으면 먼저 주위에 있는 재와 그을음을 쓸어 없앤 후에 주검을 꺼내어 뒤집어 가며 털고, 땅에 닿았던 부위에 재와 불에 탄 흔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만일 주검이 불에 타 완전히 소진되어 한 조각의 뼈나 해골이 없는 경우에는 향인 또는 이웃의 증인들로 하여금 공술을 받도록 하고, 앞의 주검은 실화로 타 죽었거나, 혹은 남에게 불에 타 죽임을 당해 해골이 남아 있지 않으니 실로 검시에 증빙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기록하여 상사에 올릴 검안을 준비한다.(本屍皮焦肉爛, 手脚聯縮, 口·鼻·耳內皆有灰燼, 委是生前被火燒死. 屍在灰火中, 先掃除周圍灰燼, 然後將屍番動, 覷著地處有無灰燼燒損. ……如屍被火燒化盡, 只是灰無條段骨殖者, 勒行人與鄰證供狀, 稱述緣上件屍首或失火燒毀, 或被人燒毀, 卽無骸骨存在, 委是無憑檢驗, 方憑備申.) '火燒死'

록 덜고 더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또한 인명이 귀중하므로 검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⁴⁶⁾라고 서술하며 인명의 귀중함과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검에 대한 검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면서 신중하게 행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역시 왕여의 인간애와 애민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무원록』을 통해 표출되는 왕여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인간애는 대부분 주검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검시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무원록』이 결국 살인사건 관련 행정적 절차나 검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의학서인 이상, 왕여의 산 자뿐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인간적 접근과 관심은 충분히 그의 휴머니즘적 경향을 발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주검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소시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그의 법의학 정신과 산자·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생명 존중의식을 그대로 체현해 낸 것이다.

정약용의 『흙흙신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약용은 우선적으로 「경사요의」 시작 부분을 통해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은 흙흙에 있다. 흙흙이란 그 사건을 조심스레 다루고 그 사람을 가련히 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또한 형사사건 처리 방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되, 조금도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된다.”⁴⁷⁾라며, 형사사건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欽恤’을 제시했다. 사건 담당관은 ‘흙흙’을 기준 삼아 모든 사건을 명확하게 다루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사건 관련인에 대한 인간적 연민을 지녀야 함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것이다. 「비상준초」와 「의율차례」에서도 중국과 조선의 살인사건 관련 판례를 두루 제시하고, 오류를 지적하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일의 막중함을 강조했다. 「비상준초」에서는 뛰어난 題詞와 牒報, 판결, 보고, 선고의 실례를 통해 당시 법례를 살피면서, 중국과 조선의 검험, 심문, 법률적용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정약용은 중국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 사례를 제시하면서 검사와 판결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자신의 평을 덧붙였다. 「의율차례」에서는 법률에 따라 형벌을 정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각 사례에서 법률 적용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며 평을 가했다. 이처럼 진실을 규명하고 형벌을 제대로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정약용의 법의학자적 태도는 인간애에 근원을 두고

46) 法有宜於古者，未必皆便於今。貴乎隨時之宜而損益之，且人命至重，檢屍最難。

47) 斷獄之本，在於欽恤。欽恤者，敬其事而哀其人也。然且斷獄之法，有經有權，不可膠柱。

있음이 분명하다. 「상형추의」부분은 진상이 확실치 않은 형사사건, 즉 疑獄의 명확한 해결과 정확한 형벌 적용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정약용의 애민 의식과 인간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상형추의」에는 주범과 종범의 구별, 자살과 타살의 구별, 다침과 병듬에 대한 처벌, 고의나 실수냐의 분별, 미치광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용서,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 한 허위고발, 범행을 탄 사람에게 회피한 경우, 세력에 대한 횡포, 협박으로 받는 재앙, 원수 갚음에 대한 용서, 인정과 도리에 대한 용서, 의로운 기개에 대한 용서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인 사건의 필수 등장 인물인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드러냈다.

정약용은 「상형추의」를 통해 형사 사건의 공평함과 정당함을 강조하며 정조의 판결에 과감히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하물며 이 7인의 모자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반드시 보통 재변이 아닙니다. 분명 귀신이 조롱했거나 정신과 혼이 헛갈려 어두워져 갑자기 요사스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7인의 목숨이 끊어진 사실의 살인죄를 논한다면 최 여인에게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자녀를 죽이는 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는 다만 최 여인이 사람을 죽인 것만 보이지, 이경휘에게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이처럼 법률을 적용하면 형사사건은 공평하고 정당해 질 것입니다. 시체검험서와 조사보고서, 황해도 의 장계와 형조의 보고는 모두가 7인이 함께 죽은 한쪽 사실에만 크게 놀라 지나치게 무겁게 죄목을 날날이 들어 탄핵했으므로 임금의 결계 판결에서도 또한 여러 논의에 따라 승인한 것입니다. 신의 뜻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신이 만일 형조에 있었다면 반드시 심리를 요청했을 것입니다.⁴⁸⁾

황해도 載寧 백성 李景輝가 최 여인이 자신의 전담에서 이삭을 주워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둑 누명을 씌우자, 최 여인은 협박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

48) 況此七母子之並命, 必非尋常災變. 定有鬼物揶揄, 神魂迷昧, 霎然一念之邪曲. 斷了七箇之性命, 若論殺人之罪, 崔女有焉. 自殺亦殺人也, 殺子女亦殺人也. 以臣愚見, 但見崔女之殺人, 不見李景輝有殺人之罪也. …… 以此照律 獄乃平允. 檢報·查報·道啓·曹啓皆於七人並命一邊, 驚動太過, 論列太重, 故御判亦因羣議而允之也. 臣意不然, 若在法曹, 必有讞也.〔威逼之厄一(糾差嚇捉 亡命投淵 根由竊禾 實因自溺)〕

고 자식들과 함께 모두 7인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황해도 관찰사는 이경휘를 가볍게는 곤장 100대, 무겁게 형을 가한다 해도 사형은 불가하다고 했다. 사건 보고를 받은 정조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건이 발생했으므로 당시 미풍양속의 훼손을 비난하며 형조에서 법의 엄한 심판을 받도록 판결했다. 이러한 정조의 최종판결에 대해 정약용은 과감히 정조의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살인사건은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함을 역설하며, 이 사건 역시 7인의 죽은 목숨에만 초점을 맞춰서 판결의 공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모욕을 견디지 못해 죽은 목숨만을 생각하여 그들을 헐박한 이경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엄벌에 처하는 것은 법의 진정성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며, 어느 정도 죄 여인에게도 자살의 책임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펼쳤다. 이처럼 정약용은 통치자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비판을 가했다. 이 사건을 통해 정약용은 모든 살인사건에서 죽은 자의 목숨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산 자의 목숨 역시 소중하기에 제대로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산자, 죽은 자 모두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정약용의 인도주의적, 애민 의식적 사고의 강한 표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상형추의」 곳곳에서 언급되는 정조 관련 기록을 통해서도 당시 통치자의 애민의식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⁴⁹⁾

49)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정조 임금 때 주범과 종범이 분별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면 언제나 반드시 먼저 그 情狀이 가벼운 자를 잡아내어 정상 참작하여 처리하고, 시간이 조금 오래되면 또 그 정상이 무거운 자를 잡아 다시 의심스런 실마리를 베풀어 마침내는 두 사람을 모두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살리기 좋아하는 나타내지 않는 자애로운 임금의 권한입니다. (臣謹案, 先朝每遇首從未分之案, 必先執其情輕者, 原情酌處, 日月稍久, 又執其情重者, 復設疑端, 畢竟使兩人皆活, 此好生之微權也.) (首從之別六(兩人共毆 一勒一踢 根由使氣 實因被踢))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김대홍이 주범이요, 김소홍이 종범이란 사실을 임금께서 살피지 못하신 바는 아니나 하교하신 지시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양쪽을 살리려는 뜻입니다. 양쪽을 모두 살리려는 까닭에 양쪽을 모두 가둔 것입니다. 또 살펴보건대, 연루된 여러 사람을 감영으로 보내지 못하게 했고, 또 곧 석방하도록 하신 것은 농사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신 것이며, 민간의 그윽한 사정을 이와 같이 밝게 살피신 것입니다. (臣謹案, 大紅之爲首, 小紅之爲從, 聖照非不下燭, 而下諭如是者, 將以兩活之也, 將以兩活之故, 兩執之也. ○又按, 干連諸人, 不令上營, 又令卽放者, 慮妨農也, 民間幽隱之情, 洞燭其如此矣.) (首從之別十四(兄弟

「전발무사」 역시 당시의 다양한 살인사건을 기록하며 자신의 의론을 덧붙였는데, 그 의론을 통해 관리로서 정약용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생각해 보건대, 살인 사건은 매우 큰일이요, 사람의 목숨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검시에 있어 초검에서 비록 의문이 없다 하더라도 재검을 폐지하지 않는다 하더니, 이 살인 사건은 이미 조사로 검시를 대신했고 처음의 조사가 비록 이와 같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관원을 차출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다.(그 뒤 수일 만에 감영의 제사에 따라 곤장으로 때려 죽였다.)⁵⁰⁾

이는 ‘곡산부 강도 김대득의 체포조사 판결장(谷山府強人金大得跟捕查決狀)’에 덧붙여진 정약용의 의론 부분이다. 이 판결장에 기록된 사건에는 진범을 찾아 처벌하겠다는 장약용의 담당 관리로서의 강한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백성 金五先이 함경도에서 소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죽었고 소까지 빼앗겼다는 것이 사건의 대강이다. 정약용은 직접 현장조사를 하며, 김오선 살해 당시의 목격자인 아이들을 이용하여 진범을 찾아내어 죽은 자와 그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이처럼 살인 사건을 접한 정약용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행동력은 그의 악에 대한 단호함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여실히 표출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도록 한다. ‘강진현 정절부의 초검안 발사(康津縣鄭節婦初檢案跋詞)’는 전라도 강진현에서 과부 정여인의 자살 사건이 벌어지자, 유배 중이던 정약용이 강진현 관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검시보고서에 대한 의론이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 정약용은 1807년에 다시 정여인 자살 사건 검시 보고서를 읽어 보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비판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정여인에 대한 연민을 금치 못했다.⁵¹⁾

同犯 一囚一放 根由使酒 實因被踢〕

50) 念殺獄至大, 人命至重, 故殺獄之行檢者, 初檢雖曰無疑, 覆檢在所不廢(是如乎), 此獄(段)既已以查代檢, 初查雖如是明白, 差官覆查, 未知何如云云.(後數日 因營題 棍殺之)

51) 가엾다. 정녀여! 현숙하면서도 운수가 사나워서 남편의 죽음이 3년이 안 되었고, 아이는 태어 난지 겨우 한 돌이 지났다. 백년의 상투를 틀고 쪽을 지고 부부가 된 정을 생각하고, 유복녀 핏덩이를 안고 깊은 슬픔을 마음에 지녔으나 매운 정절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양육의 노고를 마쳐 저승과 이승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으니, 아름다운 뜻을 돌아 불

이처럼, 「상형추의」와 「전발무사」를 통해 실제 살인사건을 맡아 직접 검시에도 참여했던 정약용의 생명 존중 경향과 은폐된 진실 속에 방치된 무력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왕여와 정약용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인문학적 성향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의 인간적 혹은 법의학자적 배려와 애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향이 법의학과 인문학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두 저서는 각양각색의 살인 사건과 검시를 통해 당시 중국과 조선의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미덕을 겸비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법의학적 검시의 측면에서 『무원록』과 『흙흙신서』의 동일성을 찾아내어, 그를 통해 두 저서의 인문학적 속성과 법의학적 속성을 조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 법의학과 인문학은 전혀 별개의 학문이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본 정신은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인문학의 저변에 깔린 인간에 대한 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단초삼아 법의학과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어 두 학문 간의 연계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 왕여의 『무원록』과 조선 정약용의 『흙흙신서』는 검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보여준다. 검시는 법의학의 정수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무원록』은 중국의 대표적인 법의학서로, 전문

때, 또한 고통스런 일이다. 참으로 조금이나마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차마 이 여자를 더럽혀 무너뜨리겠는가. …… 가엾은 정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는 고통을 품고 더럽힘은 미치겠으나 도망칠 수 없으니, 세 겹의 끈으로 스스로의 한 가닥 목숨을 끊어야 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哀哉鄭女, 賢而薄命, 郎死不及三霜, 兒生纔過一朞. 念百年結髮之情, 抱一塊遺腹之產, 深悲在中, 苦節靡渝, 庶卒鞠養之勞, 不負幽明之義, 顧其志, 良亦苦矣. 苟有一分人心, 何忍毀汚此女. …… 哀此鄭女, 當鎖門入房之時, 懷蹋天踏地之痛, 污穢將及, 逃遁不得, 遂將三糾之索, 自殘一縷之命, 思之及此, 寧不痛心. ……)

검시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중국에서의 명성 못지않게 이 저서는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판 『무원록』 시리즈로 재탄생되었다. 조선판 『무원록』의 마지막 시리즈 물이자, 중국 『무원록』의 조선판 사례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흠흠신서』이다. 사실 『흠흠신서』는 법의학서 보다는 형률서로서의 비중이 큰 편이다. 기존에는 두 저서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양자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전무한 편이다. 게다가 두 저서에 담겨있는 법의학적·인문학적 경향을 규명하려는 논의는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전혀 별개로 보이는 『무원록』과 『흠흠신서』에서 법의학적 면모를 발견했는데, 바로 검시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검시 관련 기록을 통해 두 저자의 인문학적 성향이 저서 곳곳에 담겨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무원록』과 『흠흠신서』 두 텍스트에 산재된 법의학 세계는 법의학의 정수인 검시와 검시를 중심으로 한 두 저서의 연계성, 사회범죄의 시공 초월적 동일성, 인간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는 법의학과 인문학의 소통의 장을 여실히 펼쳐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1. 연구대상 텍스트

- 王與 著, 楊奉琨 校譯, 『無冤錄校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년.
 丁若鏞 著, 朴錫武 丁海廉 校註, 『欽欽新書』, 現代實學社, 1999년.
 丁若鏞 著, 朴錫武 丁海廉 역주, 역주 『흠흠신서』 1·2·3, 現代實學社, 1999년.
 丁若鏞 著, 『欽欽新書』 1·2·3, 法制處, 1979년.

2. 단행본(중국, 한국)

- 王與 著, 甘建一·朱金生·何維貴 譯, 『無冤錄今譯』, 海南出版社, 2011년.
 김호,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2013년.
 이덕일,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1.2』: 시대가 만든 운명, 다산초당, 2012년.
 함규진, 『정약용: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한길사, 2012년.
 김인걸 외 지음,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년.
 함규진, 『정약용 정치사상의 재조명』, 한국학술정보, 2008년.

- 강대영·강현욱·곽정식 외 9인 공저, 『법의학』, 정문각, 2007년.
김호 지음, 『원통함을 없게 하라-조선의 법의학과 무원록의 세계』, 프로네시스, 2006년.
왕여 지음, 최치운 외 주석, 김호 옮김, 『신주무원록』, 사계절, 2003년.
이운성, 『법의학의 세계』, 살림, 2003년.
에르네스트 만델 지음, 이동연 옮김, 『즐거운 살인-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년.
박병호 지음, 『세종 시대의 법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년.
손보기 지음, 『세종시대의 인쇄출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년.

3. 논문(중국, 한국)

- 楊奉琨, 「王興生平及無冤錄成書年代問題考辨」, 『無冤錄校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년.
고숙희, 「18세기 한중 공안서사물에 나타난 'Justice' -『鹿洲公案』과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4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4년.
고숙희, 「조선시대 중국 실용전문서적의 전래와 수용 -『無冤錄』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42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4년.
고숙희, 「中國 傳統 法醫學으로 본 明代 公案小說」, 『中國小說論叢』 제40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3년.
심재우, 「다산 정약용과 『흠흠신서』: 조선 후기 판례집, 사례집의 유형과 『흠흠신서』의 자료 가치」, 『다산학』 v.20, 2012년.
조근석, 「다산 정약용과 『흠흠신서』: 『흠흠신서』에 수록된 조선시대 과실살 사례의 고찰」, 『다산학』 v.20, 2012년.
이종일, 「다산 정약용과 『흠흠신서』: 정다산(丁茶山)과 『흠흠신서(欽欽新書)』」, 『다산학』 v.20, 2012년.
고숙희, 「公案小說, 法醫學과 通하다 -明代 公案小說專集 중 人命案과 『無冤錄』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제35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1년.
고숙희, 「『百家公案』과 『龍圖公案』, 그리고 法醫學의 世界」, 『中國小說論叢』 제33집, 韓國中國小說學會, 2011년.
김호, 「『欽欽新書』의 일고찰(一考察) -다산(茶山)의 과오살(過誤殺) 해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v.54, 조선시대사학회, 2010년.
권연웅, 「『欽欽新書』 研究1: 『經史要義』의 分析」, 『복현사림』 v.19, 1996년.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f forensic Medicine world in 『Wu-yuan-lu』 and 『Humhumshinseo』.

『Wu-yuan-lu』's author is Wang-yu, 『Humhumshinseo』's author is Jung Yak-Yong. 『Wu-yuan-lu』 is the representative forensic Medicine book of Yuan Dynasty(元). This book is a postmortem examination's instructions, Comprises three parts. 『Humhumshinseo』 is also Chosun Dynasty's postmortem examination's instructions, is a book about criminal law. The two works have a difference of space and time, but have something in common. The two works reveal tendency of the humanities, through postmortem examination express attention to human beings.

Wang-yu suggested the contents of postmortem examination and emphasised the prudence of coroner in 『Wu-yuan-lu』. Jung Yak-yong also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postmortem examination, 『Wu-yuan-lu』 is frequently cited in 『Humhumshinseo』. Through these, we can confirm connections of the two works and tendency of the forensic medicine. It also clearly shows humanism and love for the people in 『Wu-yuan-lu』 and 『Humhumshinseo』. Through postmortem examination, Wang-yu revealed humanism with love for the people. Jung Yak-yong also expressed attention to resentful victim.

As a result, Wang-yu and Jung Yak-yong's attention for the people is just tendency of humanities. In other words, this tendency provide a space of communication for forensic medicine and humanities.

Keywords: 『Wu-Yuan-Lu』, 『Humhumshinseo』, Wang-yu, Jung Yak-yong, forensic medicine, Chosun Dynasty, Yuan Dynasty, postmortem examination, autopsy, coroner, humanism.

이 논문은 2016년 1월 7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